

학생복지시설 규정

제정 : 2013. 03. 01.

개정 : 2016. 08. 05.

개정 : 2017. 08. 11.

개정 : 2022. 10. 07.

담당 : 교학팀(02-950-5406)

----- 목 차 -----

| | | |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제1조(목적) | 제2조(적용범위) | 제3조(운영의 기본방향) | 제4조(운영주체) |
| 제5조(관리 운영의 위임) | 제6조(학생복지시설운영위원회) | 제7조(개방시간) | 제7조의2(사용) |
| 제8조(용도변경 및 관리) | 제9조(비품관리 및 인수인계) | 제10조(사용 및 관리) | 제11조(준용) |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한국성서대학교 내 복지시설 중 학생 복지를 위한 특정 복지시설(이하 “학생복지시설”이라 한다)을 관리하고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① 제1조의 학생복지시설은 다음과 같다.

1. 복지시설 : 학생휴게실(남, 여), 보건실, 총학생회실, 학회실, 동아리연합회실, 기도실 등(개정 17.08.11)(개정22.10.07)
2. 편의시설 : 학생식당, 카페테리아, 매점, 복사실, 북카페, 등(개정17.08.11)(개정22.10.07)
3. 보건시설 : 보건실 등(개정17.08.11)
4. 체육시설 : 체력단련실, 풋살장, 농구장 등(개정17.08.11)
5. (삭제22.10.07)

② 제1항 외에 기타 교학처장이 지정한 시설

제3조(운영의 기본방향) ① 학생복지시설은 학생들의 복지를 위한 개인 또는 단체 활동을 위한 장소가 되게 한다.

② 학생복지시설은 혜택이 전교생에게 균등하게 주어지도록 한다.

③ 학생복지시설은 교수와 학생 또는 학생 상호간의 대화의 장소로서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장소가 되게 한다.

④ 학생복지시설은 운영함에 있어 학생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토록 한다.

제4조(운영주체) 제3조의 기본방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생복지시설의 운영 및 제반

사무는 교학처장의 관할 하에 교학팀에서 담당한다.(개정16.08.05)

제5조(관리 운영의 위임) 교학처장은 학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이용에 있어서 학생들의 자율성을 높이고, 학생들의 취향을 조화롭게 조정 관리하기 위하여 적합한 학생, 학생 단체 또는 타 기관(부서포함)에 학생복지시설의 일상적인 관리 운영을 위임할 수 있다.

제6조(학생복지시설운영위원회) ① 학생복지시설의 용도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 등을 위하여 학생복지시설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② 학생복지시설운영위원회는 장학 및 학생복지·지도위원회와 위원 구성 및 운영을 겸하여 한다.(개정 16.08.05.)

제7조(개방시간) 학생복지시설의 개방시간은 교학처장이 각 시설별로 정하여 공고한다. 다만, 공휴일에는 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7조의2(사용) ① 학생복지시설은 개방시간 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.(개정 17.08.11)

② 학생복지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교학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학생활동지원 신청서를 사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.(개정17.08.11)

제8조(용도변경 및 관리) 학생복지시설의 용도 및 관리운영의 주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장학 및 학생, 복지 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9조(비품관리 및 인수인계) ① 학생복지시설 내의 모든 비품은 교학처장의 승인 없이 배치된 장소로부터 임의로 옮기거나 처분할 수 없다.

② 각종 학생복지시설의 기재 또는 비품을 파손한 자는 변상조치 한다.

③ 관리, 운영의 인수인수는 반드시 교학처장 승인 하에 행해져야 한다.

제10조(사용 및 관리) 삭제(개정17.08.11)

제11조(준용)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학생복지시설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본 대학의 정관 및 학칙, 규정 등을 준수한다.(신설17.08.11)

부 칙

1. (시행일) 본 규정은 2013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08월 0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08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11월 07일부터 시행한다.

